

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(도시철도국) 소관 제 1 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

검 토 보 고

I. 추경예산안 개요

1. 제안경위

1)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2) 의안번호 : 제1372호

3) 제출일자 : 2020년 3월 19일

4) 회부일자 : 2020년 3월 일

5) 추경예산 편성 사유

-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응단계 격상 등으로 시민 불안이 고조되고 방역 필요성이 증가되어, 대중교통 방역 관련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,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총괄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추경하고자 함

2. 추경예산안 총괄

가. 세입예산안

- 2020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(도시철도국) 소관 도시철도건설 사업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4,567억 95백만원 대비 52억 73백만원(0.4%)이 증가한 1조 4,620억 68백만원으로 편성됨

(단위 : 백만원)

회 계 별	제1회 추경예산액(A)	2020년 기정예산액(B)	비교증감 (C=A-B)	증감률 (%)(B/C)
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	1,462,068	1,456,795	5,273	0.4

나. 세출예산안

- 2020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(도시철도국)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음

II. 회계별 세입·세출예산안

1. 일반회계,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

가. 세입예산안 : 별도 계상내역 없음

나. 세출예산안 : 별도 계상내역 없음

2.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

가. 세입예산안

□ 기정예산 1조 4,570억원 대비 53억원(0.4%)이 증가한 1조 4,62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

○ 순세계잉여금 52억 73백만원 증액 추정

【2020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제1회 추경예산액(A)	2020년 기정예산액(B)	비교증감 (A-B)	증감률 (%)
계	1,462,068	1,456,795	5,273	0.4
도시기반시설본부	1,462,068	1,456,795	5,273	-
순세계잉여금	5,273	-	5,273	0.4

나. 세출예산안 : 별도 계상내역 없음

Ⅲ. 검토 의견

1. 총괄

- 이번 도시기반시설본부(도시철도국)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

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1조 4,567억 95백만원 대비 52억 73백만원(0.4%)이 증가한 1조 4,620억 68백만원이고,

세출예산의 경우 별도 계상내역이 없음

2. 회계별 검토의견

<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>

-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4,567억 95백만원 대비 52억 73백만원(0.4%)이 증가한 1조 4,620억 68백만원이고, 세입예산안의 변동내역은 1건으로
 - '19년 결산 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2억 73백만원 증액

※ 증액 사업 내용

<세입예산>

- 순세계잉여금 (52억 73백만원)

3.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

□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(사업별 설명서 p.156)

- 동 예산안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52억 73백만원을 추가경정 세입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
- 이는 같은 회계를 사용하는 도시교통실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따른 부족분(52억 73백만원)에 대해 같은 회계의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 세입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【도시교통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】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제1회 추경예산액(A)	2020년 기정예산액(B)	비교증감 (A-B)	증감률 (%)
총 계	1,127,913	1,122,640	5,273	0.5%
1~8호선 코로나19 대응지원	3,923		3,923	순증
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	74,716	73,785	931	1.3%
지하철 9호선 2·3단계구간 위탁운영관리	18,287	18,008	279	1.5%
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	3,354	3,213	141	4.4%

-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¹⁾을 의미하고, 결

1) 「지방회계법」 제19조(결산상 잉여금의 처리)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·세출 결산상 잉여금(剩餘金)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
2.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에 따른 이월금

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²⁾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

- 현재 “2019회계연도 세입·세출, 재무제표, 성과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등에 관한 결산”이 진행 중³⁾인 시점에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수입 발생을 전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

【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현황】

(단위 : 백만원)

2016	2017	2018	2019(추계)
26,646	4	2,135	59,915

- 다만,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고,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와의 질의회신⁴⁾을 통해 이와 같은 세입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점을 고려할 때,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 큰 문제는 없다 할 것임

2)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6조(결산상 잉여금의 처리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(移入)하여야 한다.

3)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의결(2020. 2. 21)된 이후 결산 진행중

4)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-4290('19.8.16)

전년도 세입과 세출 처리상황을 고려하여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수입 발생이 전망된다면, 지방재정 법령에 따라 당해 연도 본예산의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임